

Question

당해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하여 현장사무실의 콘테이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안전교육과 산재감소를 위하여 교육장에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정산여부가 가능한지요. [접수번호 : 11356468]

Answer

귀 질의와 같이 콘테이너를 별도 구입하여 설치하였다면, 이는 자산 취득으로 안전관리비 지출이 불가능하나, 콘테이너를 임차하여 전담 안전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지출이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Question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프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의 적정여부를 지정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확인하는 경우 당해 확인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접수번호 : 11224387]

Answer

1. 자체검사라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2「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작업을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업장 내용입니다. 채용시 이미 어떤 업무분야가 결정된 상태이고 그 업무가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한 작업이라면 채용시 배치전 건강진단을 미리 요구하고 그 근거로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 그 건강진단비는 누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11332301]


A nswer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노동부령 제240호(2005.10.7 공포 및 시행)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호, 제99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었고, 동 개정내용인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06. 1.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채용시 건강진단의 원래 취지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폐지하게 됨.
3. 다음, 위 노동부령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4호에서 규정한 “배치전 건강진단”의 정의가 기존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개정되어, 이 또한 2006. 1.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경우 그 실시 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uestion

1. 구입후 사용하지 않고 신품으로 현장에 보관된 안전관리용품을 공사 완료 후 안전관리비 실적으로는 인정하고 현물은 발주처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요?
2. 단기간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용품이 실질적으로 노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안전관리용품이라도 도급 업체에서 구입 사실만 증명하면 안전관리비사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11314708]

A nswer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별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시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합하게 구입한 품목 등은 당해 현장의 소유로서 공사 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안전관리로 지급함이 적법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실제 구입했다면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